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88 발의연월일: 2021. 11. 23.

발 의 자:권명호·유경준·김도읍

이철규 • 이주환 • 정운천

한무경 · 최승재 · 양금희

임이자 의원(10인)

제안이유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기업 등은 지식재산 기반의 사업화·거래 및 자금조달 등의 활동을 함에 있어 가치평가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발명진흥법은 가치평가에 대한 정의규정,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평가기관의 사업관련 규정, 지식재산에 대한 현물출자 특례규정 등 평가와 관련한 주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평가 대상을 기존의 등록된 발명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까지 확대하고 평가수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발명의 평가기관의 수행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발명 등을 기업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평가기관의 평가 내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더불어 현행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 센터로 하고 센터의 알선업무를 중개업무로 개정하는 한편, 중개업무 의 대상에 특허기술 이외에 상표를 추가하고, 중개를 위한 수요조사· 분석 및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기술사업화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명 등의 평가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11호)

"발명 등의 평가"를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상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상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및「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함.

- 나.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목적 및 사업범위 등 규정 정비(안 제28 조)
 - 1)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목적에 발명 등의 평가를 통한 사업

화 자금 지원 등을 촉진하는 것을 추가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함(안 제28조제1항).

- 2)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평가전문인력, 평가조직 및 시설을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제2항).
- 3)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에 평가를 요청하면, 평가를 요청 받은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 4) 발명의 평가기관의 수행 사업을 발명 등의 평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8조제5항).
- 다. 발명 등의 평가를 통한 현물출자 특례 신설(안 제28조의2)

발명 등의 평가 대상인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상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상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및「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를 기업에 현물 출자하려는 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그평가 내용은「상법」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고,이 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인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

- 라. 발명의 평가기관에 대한 각 호의 지원 대상을 발명평가에서 발명 등의 평가로 규정(안 제29조)
- 마. 평가수수료 지원 대상을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 서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로 확대(안 제30조)
- 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4조)
 - 1)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발명 관련 기술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34조제1항).
 - 2)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알선업무를 중개업무로 개정하고, 중 개 대상에 상표를 추가함. 또한 중개를 위한 수요조사·분석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4조제2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 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상표법」제 2조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영업비밀"이라 한다)
 - 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배치설계"라 한다)

제28조제1항 중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사업성"을 "발명 등의 평가를 통해 사업화 및 사업화 자금 지원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인력"을 "평가전문인력, 평가조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명을 사업화하려는"을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으로. "따라 지정된 평

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을 "따른 평가기관에 발명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명을 먼저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를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발명 등의 평가
-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제28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인으로 본다.

1.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 2. 영업비밀
- 3. 배치설계

제2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발명평가"를 각각 "발명 등의 평가"로 한다.

제30조 중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을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발명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 2. 영업비밀
- 3. 배치설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사업화지원센터"로, "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명 관련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을 "특허기술"로, "산업재산권"을 "특허기술 및 상표"로, "알선"을 "중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알선(산업재산권자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중개(산업재산권자가 사업화지원센터"로,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를 "사업화

지원센터는 이를 제3자"로, "제삼자로부터"를 "제3자로부터"로,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가"를 "사업화지원센터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촉진과 특허기술의 알선"을 "지원과 특허기술의 중개"로 한다.

- 3. 특허기술 및 상표의 중개를 위한 수요조사·분석 및 평가
- 4. 특허기술 및 상표의 중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제34조제3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설립·운영"을 "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사업화지원센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
	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
	<u>을 말한다.</u>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
	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u>한다)</u>
	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
	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이하 "영업비밀"이라 한
	<u>다)</u>
	다.「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
	<u>하"배치설계"라 한다)</u>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있다.
-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u>전문인력</u>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③<u>발명을 사업화하려는</u> 자는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 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④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u>발명을 먼저 분</u>
 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① 발명 등의 평가를
통해 사업화 및 사업화 자금 지
원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②
평가전문인력, 평가조
직
③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u>따른 평가기관</u>
에 발명 등의
,
4
<u>지체 없이 평가를</u>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
⑤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⑤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1. 평가대상 기술 및 평가범위

 2. · 3. (생 략)
- <u>⑥</u> (생 략)

<신 설>

- 1. 발명 등의 평가
-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

 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사업
- <u>⑥</u> -----

-----.

-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 2. · 3. (현행과 같음)
-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8조의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인으로 본

제	29조(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특	:_
	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
	있다.	

- 1. <u>발명평가</u> 전문인력의 양성
- 2. 발명평가 기법의 연구
- 3. <u>발명평가</u>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4. 그 밖에 <u>발명평가</u>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 청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u>발명의</u>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 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u>다.</u>
	1.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
	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2. 영업비밀
	<u>3. 배치설계</u>
	제29조(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1. <u>발명 등의 평가</u>
	2. <u>발명 등의 평가</u>
	3. <u>발명 등의 평가</u>
	4 <u>발명 등의 평가</u>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	<u>발명 등</u>
	의 평가를 받은
	<u>.</u>
-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

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 여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다.

- ②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발명 관련 기술(이하 "특허기 1. 특허기술 -----술"이라 한다) 상설시장과 인 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2. ------사용권 허락의 알선(산업재산 권자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 터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 용을 허락하고, <u>특허기술사업</u> 화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에 터는 이를 제3자-----

①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 의 설치 등) ① 특허청장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발명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 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 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 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 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 1.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 거나 등록된 발명
- 2. 영업비밀
- 3. 배치설계
- ② 사업화지원센터---------- 한다.

 - -- 특허기술 및 상표--------- 중개

 - ----- 중개(산업재산 권자가 사업화지원센터----

 - ----- 사업화지원센

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 경우 그 제삼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 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 위와 절차에 따라 <u>특허기술사</u> 업화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의 알선・평가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신 설>

- 4. (생략)
- 5.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특허기술의 알선 사업 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정부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 센터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④<u>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u>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u>제3자로부터</u> -		
	 사업화지원		
	 센터가		
	특허기술 및 상표의 중개를 위한 수요조사·분석 및 평가		
	특허기술 및 상표의 중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u>5</u> .	<u>제공</u>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u> 지원과 특허기술의 중개</u>		
) <u>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u> <u>운영</u>		
4) <u>사업화지원센터</u>		

로 정한다.	